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되어 병역의 종류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이 신설됨.

이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단체종목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중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체종목의 팀워크 및 매달수여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실제 출전한 선수뿐만 아니라 메달 수상자 전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고,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병적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2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이 병적관리하는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대체역의 병적기록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안 제68조의11)

단체종목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중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체종목의 팀워크 및 매달수여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실제 출전한 선수뿐만 아니라 메달 수상자 전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시기 조정(안 제107조)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역의무자 연기 관련 규정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추가(안 제

126조 등)

1) 재학사유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소집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2) 25세 미만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소집이 연기된 것으로 봄.

3) 국외 선박승선, 국외거주 등으로 소집이 연기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소집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규정(안 제130조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정함.

바.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규정(안 제135조 등)

1) 대체역이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대체역으로 복무 중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하도록 함.

4)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가족과 함께 국외이주한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하고, 1년 6개월 이내 출국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집해제를 취소하고 재복무하게 함.

5) 대체역이 부모가 없거나, 귀화, 성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하도록 함.

6)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대체역이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면제하도록 함.

사. 복직 시 실제근무기간 산정 및 응시상한연령의 연장(안 제151조 등)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대체복무요원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1개월로 하며,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아. 보상 및 치료,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규정(안 제152조 등)

1)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부상(질병)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함.

자.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규정(안 제155조의3)

대체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는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차. 병역기피자의 고발 규정(안 제165조)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이 고발하도록 함.

카. 포상금 지급 규정(안 제166조)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행위에 대체역이 허위로 편입되거나, 허위증명서 등이 발급된 경우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예비역 및 보충역:”을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제5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제68조의11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동으로 공중보건 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를 “합동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무시간”을 “공중보건 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시간”으로, “복무”를 “복무 여부 및 근무시간 외에 해당업무 외의 업무 복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제107조제2호 중 “배치되기 전”을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실시”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현역병입영 대상”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사람에”를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로 한다.

제128조제1항제2호 중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을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28조의2제2항 중 “사람에”를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을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를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현역병(현역병입영)”을 “현역병, 대체복무요원(현역병입영 통지서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를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편입할”을 “편입하거나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제132조, 제135조, 제136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등”이라 한다)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기준”을 “전시근로역편입등의 처분기준”으로 한다.

제1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를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전시근로역편입등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를 “전시근로역편입등 처분하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를 “전시근로역편입등 처분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를 “전시근로역편입등 처분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를 “전시근로역편입등 처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2항을”로, “같은 호”를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법 또는 「예비군법」”을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2항”으로, “보충역 편입원서”를 “병역감면원서”로 한다.

제130조의2제1항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를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3조의2제1항 및”으로 한다.

제1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을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3조의2제1항,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를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5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역병입영”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으로, “현역병입영”을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으로, “입영일”을 “입영일 또는 소집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의2제2항”으로, “편입을”을 “편입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로, “보충역 편입원서”를 “병역감면원서”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법 제63조제2항”을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3조의2제2항”으로, 같은 항 및 제5항 중 “사회복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전단 중 “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을 “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제4항”을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시근로역 편입”을 “전시근로역편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회복무요원으로”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회복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있”을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병역처분변경원서”로,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려”를 “해당하여 전시근로역편입등의 처분을 원하”로 한다.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대상은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7조제2항 중 “예비역·보충역”을 “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제4항”을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43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대체복무 대상 등

제1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본문 중 “입영”을 각각 “입영·소집”으로 하며, 같은 호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입영”을 “입영·소집”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2호 중 “입영일”을 “입영·소집일”로 한다.

제151조 본문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2조의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보상)”을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으로 한다.

제153조제1항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이 치료”로, “복무지도교육”을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3조의2제2항 전단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로 한다.

제153조의4제1항 전단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시근로역 편입”을 각각 “전시근로역편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및 병무청장”을 “, 병무청장”으로, “같다”를 “같다) 및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체복무요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은”을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상근예

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을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을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56조제2항에 제30호의2 및 제3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 · 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제158조제1항제4호 중 “제4항 및 제8항”을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학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예술 · 체육요원, 공중보건의학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를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을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제33조의10제2항”으로, “또는 제33조의10제2항”을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중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를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 및 제91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호는 이 영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 의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제2조(병적 관리)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예비역 및 보충역</u> :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3. <u>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u>보충역</u> ,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 ----- <u>보충역·대체역</u> ----- ----- ----- -----.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8. (생 략)	<u>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u>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
<u><신 설></u>	-----
3. ~ 8. (생 략)	-----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 3. (생 략)	-----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u>사람(단체경기종목</u>	2의2. 「 <u>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u>
	3. ~ 8. (현행과 같음)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사람</u>

<u>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u>	5. -----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u>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u>	----- <u>사람</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 ⑤ (생 략)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합동으로 공중보건 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u>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
1. 근무시간 중 「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 「 <u>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u> 」 및 「 <u>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u> 」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 <u>복무 여부</u>	--- <u>합동으로</u> -----
2. 근무시간 외에 제1호에 따른 <u>해당업무 외의 업무 복무 여</u>	-----

	1. <u>공중보건 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시간</u>

	--- <u>복무 여부 및 근무시간</u>
	<u>외에 해당업무 외의 업무 복무</u>
	<u>무</u> -----
	2. <u>대체복무요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u>

부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 ----- ----- ----- -----.
1. ~ 1의3. (생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2. ----- ----- ----- ----- ----- 배 치되기 전에 실시하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실시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생략)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	② -----

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 <u>현역병입영대상</u> ----- ----- <u>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u> ----- ----- -----.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 <u>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u>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

③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일 때 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 1명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32조, 제135조, 제136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 편입 등”이라 한다)할 ---. --- 전시근로역 편입등의 처분기준 ---.

③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 전시근로역 편입등 처분-----.

1.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 전시근로역 편입등 처분하고-----

--- 전시근로역 편입등 처분한다.

2. -----

----- 전시근로역 편입등 처분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겐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3. (생략)
⑤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에 대해

--- 전시근로역 편입등 처분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2항을 -----

-----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2항-----

-----.

1. (현행과 같음)
2.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3. (현행과 같음)
⑤ -----
---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2항--- 병역감면원서-----

서는 본인이 원하면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3조의2제1항 및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3조의2제1항,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2제1항----- ----- ----- ----- ----- ----- -----.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
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등----- ----- ----- ----- ----- ----- -----.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

-----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
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
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

법 제65조제1
항제1호,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
요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
무요원,
② 보충역·대체역

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
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③

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
시근로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
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
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생 략)
- ④ (생 략)
- ⑤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으로
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
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
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
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
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
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illegible]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⑧ ~ ⑩ (생략)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

⑥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으로 -----

-----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⑦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 2.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① -----

-----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
-----.

1. · 2. (현행과 같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대상은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병역처분변경원서-----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 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 사 연기, 입영 연기 또는 <u>사회</u> <u>복무요원</u> 소집 해제처분이 취 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 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 ----- ----- <u>입영·소집</u> --- <u>사회</u> <u>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u>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3. <u>입영·소집</u> -----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 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 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 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2. -----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u>입영일이</u>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 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 는 경우	----- ----- <u>입영·소</u> <u>집일</u>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 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 조제2항 단서에 따라 <u>승선근무</u> <u>예비역</u> 또는 <u>보충역</u> 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 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 1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 이 21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 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 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 ----- <u>승선근무</u> <u>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u> <u>요원</u> ----- ----- ----- -----.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u>승선근무</u> <u>예비역 또는 보충역</u> 복무를 마 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 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 <u>승선근무</u> <u>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u> <u>요원</u> ----- ----- ----- ----- ----- ----- -----

각 호와 같다.	-----.	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	-----
제15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상)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
(생 략)	(현행과 같음)	있다.	---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u>사회</u>	① ----- <u>사회</u>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⑤ -----
<u>복무요원</u> 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	<u>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u> 이 치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	-----
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	<u>료</u> -----	며, 이미 <u>사회복무요원</u> 이 그 비	----- <u>사회복무요원·대체</u>
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	-----	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	<u>복무요원</u> -----
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	----- <u>복</u>	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	-----
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u>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와 대체복</u>	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	<u>무요원이 「대체역의 편입 및</u>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
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	<u>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u>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u>에 따른 교육</u> -----	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	-----
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	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	-----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	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	-----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	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
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지방	-----	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	-----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	-----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 -----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인근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② -----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	-----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
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	-----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u>사회</u>	----- <u>사회</u>

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u>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u> -----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u>사회복무요원</u> 의 유족에게 지급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 <u>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u> 의-----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3조의4(장해보상금) ① 장해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u>사회복무요원</u> 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153조의4(장해보상금) ① ----- <u>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u> -----
② 삭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지방자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

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u>사회복무요원</u>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 ----- ----- ----- ----- <u>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숙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 ----- ----- ----- -----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u>전시근로역</u>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1. ----- <u>전시근로역</u> 편입 등 ----- ----- ----- -----

②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u>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u>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u>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u>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u>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u>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u>이 각각 정한다.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생략)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0. (생략) <신설> 31. · 32. (생략)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u>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u>-----. ----- <u>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u>-----. ③ ----- <u>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u>----- <u>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u>-----.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0. (현행과 같음)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u>대체복무요원</u>의 <u>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u> 31. · 32. (현행과 같음)
--	--

<신설> 33. · 34. (생략) ③ · ④ (생략)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65조제1항, 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로 한정한다) ② ~ ⑤ (생략)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생략)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훈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 3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술훈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
--	--

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		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 또는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과 위법·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 및 제91조의2-----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5137 (042) 481 - 2677